

의안번호	2216685
의 퇴 인	조은희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2.
추 계 번호	26B0852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	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<u>설치·운영하여야 함</u> (제1항) ※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 의무화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 의무화(안 제35조제1항)

- 현행법은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¹⁾하고 있음

1)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36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표 1]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정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분	계	지자체 직영	위탁
전국	231	75	156
	100.0%	32.6%	67.4%
서울	13	0	13
부산	6	0	6
대구	23	0	23
인천	12	0	12
광주	4	0	4
대전	1	1	0
울산	11	0	11
세종	1	0	1
경기	26	12	14
강원	19	10	9
충북	9	2	7
충남	17	7	10
전북	24	6	18
전남	23	12	11
경북	22	12	10
경남	19	12	7
제주	1	1	0

주 1: 지자체 직영: 시·도, 시·군·구가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
2. 위탁: 시·도, 시·군·구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(출처: '24년 동물보호·복지 실태조사)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동물보호센터의 시설·인력 등의 규모와 그에 따른 운영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·유기동물 보호·관리 강화 및 입양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설치(신·증축)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[표 2]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예·결산 현황:2023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3		2024		2025		2026
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반려동물인프라구축 (3740-310)	5,841	5,186	5,623	5,323	5,643	5,643	3,05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